

#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5
----------	------

발의연월일 : 2012. 6. 13.

발의자 : 나정숙 · 김철진 · 박은경 · 성준모  
윤미라 · 이민근 · 전준호 의원(7인)

## 1. 제안이유

최근 여성정책의 새로운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성정책의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있고 지역여성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시는 작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관련 후속사업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안하게 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
-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
- 바.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부터 제26)

### **3. 조례안 : 붙임참고**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논의

##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평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공공기관,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여성 시민 등 협의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담당부서의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3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内外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혼인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5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협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균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녹색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시민이나 기업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0조(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성평등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여성 · 직장여성 · 전업주부 · 영유아 돌봄여성 · 취약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26일  
제 출 자 : 경제사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별도의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유사한 기능한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녹색환경 조성 촉진의 조항을 삭제코자함(안 제17조)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하되 구성 등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설치된 “안산시 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함.(안 제21조 ~ 안 23조)

#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녹색환경 조성 촉진)를 삭제한다.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안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안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0조 제2항을 제20조로 하고, 제1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른 안산시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안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21조(구성 등)는 삭제한다.

안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는 삭제한다.

안 제23조(해촉)는 삭제한다.

안 제24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25조를 제22조로 한다.

안 제26조를 제23조로 한다.

#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7조(녹색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시민이나 기업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촉진) (생략)	제17조(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촉진) (원안과 같음)
제19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생략)	제18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원안과 같음)
제20조(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lt;신 설&gt;</u>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제19조(설치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안산시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삭 제>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lt;신 설&gt;</u>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원 안	수 정 안
	<p>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p> <p>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에 관한 사항</p> <p>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p> <p>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p> <p>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 한 사항</p> <p>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 성사업에 참여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 원은 시의원, 성평등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 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여성·직장여 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여성·취약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p>	<p>제21조 &lt; 삭제 &gt;</p>
<p>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p>	<p>제22조 &lt; 삭제 &gt;</p>

원 안	수 정 안
<p>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li> <li>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li> <li>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p>제23조 &lt;삭 제&gt;</p>
<p>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1조(회의) ① &lt;삭제&gt;</p> <p>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제25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	제22(수당등)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p>축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3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p>